

性齋 許傳의 深衣 연구

차 서 연*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 유학자들이 존송한 深衣에 대한 性齋 許傳의 해석을 고찰한 것이다. 허전은 『禮記』 「玉藻」와 「深衣」, 『儀禮』 「喪服」의 기록이 서로 보완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家禮』와 함께 『예기』와 『의례』를 상세하게 고찰하고 분석하여 고경의 본지를 얻은 듯하다고 자부하였다.

심익은 文武와 貴賤, 吉凶, 男女의 구분 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입을 수 있으며 그 형태는 상징성까지 담고 있다. 턱 아래 네모난 方領은 곱재(矩)와 같은 방정함(方), 반원 형태의 둥근 소매는 그림쇠(規), 등술은 먹줄(繩)과 같은 곧음(直), 아랫단이 가지런함은 저울(權衡)과 같은 평평함(平)을 상징한다. 下裳의 12폭은 1년 12개월의 큰 수에 응한하는 의미이다.

심익의 해석 가운데 특히 曲袷과 續衽鉤邊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허전은 경문을 토대로 의미와 위치를 명확하게 고증하였다. 曲袷은 턱 아래가 네모난 方領이고, 衽은 上衣와 下裳에 모두 있어 상의의 衽은 衿으로 상의의 길옆과 方領의 끝에 위치하고, 하상의 衽은 12폭 중 끝에 있는 2폭이 續衽鉤邊이라고 결론지었다. 당시 턱 아래가 네모난 형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허전은 이 형태만이 고례와 『가례』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허전이 제시한 심익의 고례를 준수하고 검소함을 숭상하여 완벽하면서도 낭비가 없는 옷이다. 그는 조선에서 심익의 간편함을 알고 제대로 만들어 입는다면 성인을 따르고 예를 갖추 수 있으면서 직물까지 절약하는 선왕의 의제가 회복될 것으로 확신하였다.

[주제어] 深衣, 方領, 許傳, 士儀, 性齋集, 家禮, 禮記, 儀禮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상징성까지 고려한 深衣의 형태 강조 |
| II. 허전이 재해석한 深衣의 형태 | IV. 허전 深衣의 특징과 含意 - 맺음말을 대신하여 |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원 / aieni@naver.com

I. 머리말

‘심’의 상하가 연결되어 몸을 깊숙이[深] 감쌀 수 있는 뜻을 취하여¹⁾ 이름을 붙인 의복이다. 皇帝가 乾坤을 본받아 심의와 大帶를 만들고, 虞舜이 노인을 봉양할 때 착용해 아주 오래전부터 형상을 갖추고 제도를 숭상하였다. 길흉에 모두 착용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귀하거나 천하거나 모두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²⁾ 漢代부터 常服으로 착용하였는데, 한대 말기부터 사라졌던 것을 宋代에 문헌을 고증하여 제작해 입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宋代 朱子(1130~1200)가 저술한 『家禮』의 전래와 함께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의례복과 일상복으로 착용하였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심의를 선호하게 된 이유는 『가례』의 실천을 가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가례』는 冠婚喪祭에 두루 적용되는 通禮의 필수항목으로 ‘深衣制度’를 싣고 있다. 아울러 심의의 형태는 옷을 이루는 요소 하나하나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였으며, 심의를 착용했을 때 체득되는 마음가짐과 몸가짐, 또는 그로 인해서 실천하게 되는 유교의 도덕이 있음을 유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다.³⁾ 그러나 『가례』의 ‘심 의제도’와 ‘深衣圖’는 실용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심 의제도에 대한 탐구의 열기를 불러왔다. 이런 심 의의 형태에 대해 『가례』를 古禮의 정신에 따라 수정하면서⁴⁾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학자로 性齋 許傳(1797~1886)이 있다. 허전은 오랜 시간 공들여 『士儀』를 저술하였는데, 여기에는 고대의 심의에 대한 기록인 『禮記』 「玉藻」와 「深衣」편의 구절에 대한 상세한 논증과 허전의 해석이 들어있다.

본 연구는 『士儀』를 중심으로 허전이 주장하는 심의의 형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의 학자들은 심의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제작하기 위해 각자의 문집에 논변을 기록하였는데, 허전은 자신의 해석에 부합하는 도설까지 싣고 있으며 직접 제작해 입고 초상화를 남길 정도로 심의에 대한 관심이 특별했다. 심의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학자별 형태나⁵⁾ 상징성,⁶⁾ 구성법⁷⁾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여럿을 때 마름모 형태를 直領으로, 턱 아래가 네모난 형태를 方領으로 분류하고 깃 모양이 심의의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⁸⁾ 허전의 심의에 대한 연구도 심의제도에서 턱 아래가 네모난 方領 형태의 사례로 다루어졌을 뿐이다.⁹⁾

1) 『禮記注疏』 卷58, 「深衣」, 孔疏: “此深衣衣裳相連, 被體深邃, 故謂之深衣.”

2) 許傳, 『士儀』 卷17, 「法服篇1」, “肇自黃·虞, 有曰深衣。【黃帝法乾坤, 設深衣大帶, 有虞氏深衣而養老。】訖于三正, 【子丑寅, 夏殷周三統。】上下共之, 象備矣, 制尙矣, 用廣矣。【吉凶同制, 男女同服, 天子諸侯服之朝廷燕私, 貴賤可服。】”

3) 劉權鍾, 「茶山 丁若鏞의 深衣說 연구」, 『退溪學報』 105, 퇴계학연구원, 2000, 71~75쪽.

4) 장동우, 「『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 과정 - 동전 판본 문제를 중심으로 -」, 『국학연구』 1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197~198쪽.

5) 鄭惠敬, 「조선시대 초기 실학파의 복식관: 한백겸, 유흥원, 이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6, 한국의류학회, 1996; 劉權鍾, 「茶山 丁若鏞의 深衣說 연구」, 『退溪學報』 105, 퇴계학연구원, 2000; 윤호진·박윤미(역), 『심의고증』, 민속원, 2014;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影幀과 方領深衣」, 『화서학논총』 6, 화서학회, 2014; 지금완, 「久菴 韓百謙의 方領 深衣 研究: 조선시대 심의설과 대비하여」, 『한문고전연구』 29, 한국한문고전학회, 2014.

6) 권영숙·정혜경, 「易을 통하여 본 深衣의 象徴性」, 『服飾』 16, 한국복식학회, 1991.

7) 金正子, 「深衣構成에 관한 研究」, 『韓國服飾』 8,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1990.

8) 정혜경·권영숙·문명옥·최은주, 「조선시대 深衣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3: 1, 한국의류학회, 1989; 金正子,

그러나 허전의 심의설은 그의 예설을 설명하면서 핵심 성과로 언급될 정도로¹⁰⁾ 『예기』와 『가례』의 기록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논증하며 심의가 가진 의미와 상징성까지 고려한 형태로 제시된 것이다. 본 연구는 方領 심의의 한 사례로 언급될 뿐 전문적인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던 허전의 심의 형태와 특징에 대해 『사의』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허전이 재해석한 深衣의 형태

허전의 심의는 상복과 형태가 같은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는 『예기』 「옥조」와 「심의」, 『儀禮』 「喪服」 등의 기록이 서로 보완하면서 남아 있음에도 학자들이 익히지 않아 한나라 이후로 지금까지 3천 년이 흐르는 동안 논란과 학설이 많은데도 정론이 없음을 비판하였다. 고례에서 1~2가지를 터득한 사람도 옷과 말, 그림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비난을 받으면 「凶服」을 핑계로 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기괴하고 어설픈 형태라 살아서는 입지 않고 지각이 없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상황을 한탄하였다.¹¹⁾ 허전은 조선 심의의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친 『가례』와 심의의 경학적 근거인 『예기』를 토대로 심도있게 분석해 심의의 형태를 재해석하였다.

1. 소재와 자(尺度)

심의는 『가례』에서 희고 고운 베를 사용한다.¹²⁾ 허전도 정련한 15승의 베로 올은 정련하고 베는 정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조선의 北布 가운데 곱고 너비가 넓은 것을 정련하고 다듬어 부드러우면서도 질기게 하면 된다고 보았다. 寒岡 鄭逵(1543~1620)는 무명(綿布)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집이 부귀하더라도綾이나 絹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였다. 정구의 주장에 동의한 허전은 심의가 “완전하고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고 고대에는 무명(木綿布)이 없어서 쓰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¹³⁾

자는 『가례』에 指尺을 기준으로 삼는데, 중지의 가운데 마디가 1촌이다.¹⁴⁾ 허전도 지척을 기준으로 삼았

「方領深衣制의 實證的 研究」, 『한복문화』 4: 1, 한복문화학회, 2001.

9) 정혜경, 『심의(深衣)』,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10) 정경주, 「性齋 許傳의 士儀 禮說에 대하여」, 『東洋漢文學研究』 19, 동양한문학회, 2004.

11) 許傳, 『士儀』 卷17, 「法服篇1」, 「獨賴 玉藻」·「深衣」·「喪服」數篇者存, 軼舉而互備之, 可按而詳, 學者未溫也. 自漢至今, 垂三千年, 難者鱗沓糾紛, 未有定論. 雖或有得其一二者, 衣自衣, 言自言, 圖自圖, 自我相舛, 已若別人異世 而同我又安望乎? 是以苟服矣, 貽譏於詭異懶緩, 甚者目之凶服. 生不近身, 死則襲尸, 死者有知爲如何哉? 惜乎!

12) 『家禮』 卷1, 「通禮」〈深衣制度〉, “裁用白細布.”

13) 許傳, 『士儀』 卷17, 「法服篇1」〈深衣制度〉, “以廣布白細者爲材. 【縷十五升, 【升一作登, 一升八十縷.】 有事其縷, 無事其布, 【未經布時, 先治其縷.】 我國北布之細而廣者, 練濯搗砧, 使之柔韌, 無不宜也. ……嶺南先賢有用綿布, 【寒岡】 此則無妨, 而富貴家之代以綾絹, 大違, 苦衣 【去聲】 易有之義也. 【三代之時, 無木綿布, 若有則其在完且不費之義. 必用無疑.】”

14) 『家禮』 卷1, 「通禮」〈深衣制度〉, “度用指尺. 【中指中節爲寸.】”

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키(長短)와 몸집(肥瘦)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또 손가락은 긴데 키가 작거나 손가락은 짧는데 키가 큰 사람도 있으므로 마르거나 뚱뚱하거나 몸에 맞추는 것을 우선한다. 허전은 당시 조선의 부녀들은 布帛¹⁵⁾에 익숙하므로 반드시 指尺으로 비교한 다음 마름질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⁶⁾

허전이 언급하는 치수는 실제로 사용되는 치수로 솔기까지 언급한 것이 아니므로, 솔기까지 헤아려 여유 있게 재단하고 부족하지 않게 한다. 특히 조선의 베는 너비가 좁은 것이 많아 솔기는 1촌이 아닌 반촌만 해도 여유가 있다고 보았다.¹⁷⁾

2. 상의 몸판(衣身)

『가례』에 상의는 베 2폭의 가운데를 접어 앞뒤로 모두 4폭이 되게 하고, 길이는 옆구리를 지나게 하였다.¹⁸⁾ 허전은 『가례』를 따라 상의를 만들었지만, ‘袪’를 ‘상의 몸판(衣身)의 너비’로 해석한 특징이 있다. 「喪服」의 경문에 ‘1척 2촌’의 크기만 언급된 袪에 대해 鄭玄(127~200)이 ‘소맷부리(袖口)’로 해석하였고,¹⁹⁾ 『가례』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허전은 상의를 재단하지 않고 소매를 우선한다면 소매를 붙일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²⁰⁾ ‘상의 몸판(衣身)’으로 해석해 길과 衽을 포함한 것으로 보았다.

萬物에는 말단이 있으면서 근본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없다.……어찌 先王의 法服을 말하면서 유독 상의 몸판(衣身)이 없고 소맷부리(袖口)만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옥조」에서 三袪를 첫머리에 말한 까닭이다. 袪라는 것은 상의(衣)의 근본이다.……만약 袪를 소맷부리(袖口)의 끝이라고 한다면 다시 상의 몸판(衣身)의 제도를 말할 곳이 없으니 옷이 없는데, 소매(袖)를 어디에 붙이겠는가?²¹⁾

허전은 袪가 上衣 몸판의 이름으로, 옷의 근본이라고 규정하였다. 상의의 앞뒤와 衽이 합쳐져 3개의 袪가 되므로 「옥조」에서 “십의는 3개의 袪이다.”²²⁾라고 한 것이다. 그 너비의 기준은 겨드랑이로, 왼쪽이 3개의 袪이고 오른쪽도 3개의 袪가 된다.²³⁾ 袪는 길과 衽을 합친 이름으로 상의의 뼈대(綱)이며, 너비 1척 2촌이

15) 布帛尺: 직물(布帛)에 사용하는 자로,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영조 26년에 46.8cm로 고정되었다(李恩卿, 「朝鮮王朝의 布帛尺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15~21쪽 참조). 사람의 중지 가운데 마디를 기준으로 하는 지척의 1촌이 2.5~3cm 사이라고 본다면, 포백척의 1촌은 3.5cm 정도로 차이가 있다.

16) 許傳, 『土儀』卷17, 「法服篇1」〈深衣制度〉, “視人之長短肥瘦, 用指, ……度之。【然或指長身短, 指短身長, 肥瘦亦然者, 不可泥也。故曰中。中者, 中於其身也。……【今之婦女, 習於俗用布帛尺, 蓋俗尺一尺爲周尺二尺餘, 必以指尺較而曉之, 然後乃可裁制。】”

17) 許傳, 『土儀』卷4, 「成人篇1·冠」〈陳設之具·深衣〉, “凡此尺寸之數, 但定其實用之數, 不及於縫殺之資, 必於裁割時, 先度縫資, 使有剩餘, 而勿令欠縮可也。我東之布, 狹者多而廣者少, 縫殺雖依古言之, 然不必以一寸爲拘矣。半寸亦可也。問諸婦女, 半寸無所不足云耳。”

18) 『家禮』卷1, 「通禮」〈深衣制度〉, “衣全四幅, 其長過脇。【用布二幅, 中屈下垂, 前後共爲四幅, 如今之直領衫。但不裁破腋下。】”

19) 『儀禮注疏』卷34, 「喪服·記」, “袪, 尺二寸。” 鄭注: “袪, 袂口也。尺二寸, 足以容中人之併兩手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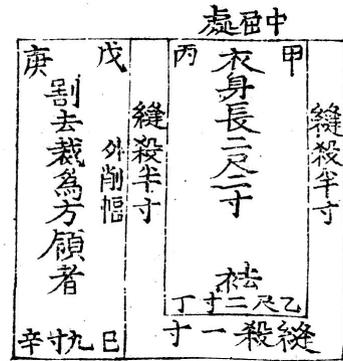
20) 『性齋集』卷9, 「雜著」〈深衣喪服制度策問〉, “衣身裁削之度, 宜在篇首而「深衣」, 則深衣三袪之袪, 鄭注釋爲袖口, 未裁衣而先袖, 則袖將焉傳?”

21) 許傳, 『土儀』卷17, 「法服篇1」〈三袪辨〉, “物未有有末而無本者。……豈先王之法服, 獨無衣身而有袖口哉? 此「玉藻」所以首言「三袪也。袪者, 衣之本也。……若以袪爲袖口之末, 則更無言衣身制度, 處衣之不存, 袖將焉傳?”

22) 『禮記注疏』卷29, 「玉藻」, “深衣三袪。”

상의를 재는 뼈대가 된다고 주장하였다.²⁴⁾

허전의 상의도 좌우 2폭으로 각각의 길이가 4척 4촌인 것은 『가례』와 같다. 베의 가운데를 접어 앞과 뒤 4조각으로 만드는데, 각각의 길이는 2척 2촌이다. 그러나 상의의 너비는 『가례』와 달라 袷의 너비인 1척 2촌을 기준으로 한다. 옛날 베의 너비가 2척 2촌이므로 재단 방법은 <그림 1>과 같이 1척 2촌을 제외한 베 폭의 바깥을 잘라낸다.²⁵⁾ 이 방법은 「상복」에서 말한 “베의 가장자리를 잘라낸다 [外削幅]”라는 의미로 상복과 심의에 모두 적용된다.²⁶⁾ 등수를 꿰맬 때는 베에서 잘라내지 않은 부분끼리 맞대서 바느질하고, 길과 衽을 연결할 때도 잘라내지 않은 부분을 맞대서 바느질한다.²⁷⁾



<그림 1> 『士儀』 深衣 상의 몸판[衣身] 재단법

3. 진동, 소매, 소매부리

『가례』의 소매는 베 2폭의 가운데를 접어 길의 좌우에 하나씩 붙인다. 너비는 2척 2촌이고, 배래는 둥글며 소매부리는 1척 2촌이다. <그림 2-①>과 같이 너비와 길이가 2척 2촌인 소매를 길의 좌우에 하나씩 붙이고 <그림 2-②>와 같이 2척 2촌부터 소매부리 1척 2촌까지 둥글게 꿰매 배래를 만든다.²⁸⁾ 허전의 소매는 『가례』와 다른데, 「심의」에 “진동[袷]의 높낮이는 팔꿈치를 돌릴 수 있게 하고, 소매의 길이는 반대로 접어서 팔꿈치에까지 이르게 한다.”²⁹⁾라는 기록을 근거로 소매의 형태를 재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상의의 길과 소매를 연결해 꿰매 만드는 진동은 『가례』가 상의와 가지런하게 제시하였다면, 허전은 팔꿈치를 돌릴 수 있는 정도인 ‘겨드랑이’로 제한하였다.

옷 소매와 겨드랑이를 꿰매는 것이다.……어깨로부터 겨드랑이까지 꿰매되 팔꿈치를 움직여 넣고 빼는 것을 법도로 삼아 그 진동은 상의 몸판[衣身]은 상의 몸판대로, 소매는 소매대로 경계가 나뉘어야 한다.³⁰⁾

23)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玉藻【「玉藻」『禮記』篇名】解〉, “深衣三袪【音祛, 入聲又上聲。【祛, 上衣元身之名也。衣前後二葉, 及衽一葉, 爲三袪。以其闊狹準當祛處爲度, 故字音從祛。祛, 脅也。左三袪也, 右三袪也。】”

24) 許傳, 『士儀』卷4, 「成人篇1·冠」〈陳設之具·深衣〉, “曰「祛尺二寸」, 祛實衣之綱, 尺二寸又度衣之綱, 有本者, 如是。”

25) 許傳, 『士儀』卷4, 「成人篇1·冠」〈陳設之具·深衣·衣身〉, “左右二幅, 各長四尺四寸。中屈之爲前後四片, 各長二尺二寸。更量廣尺二寸爲衣, 正其尺二寸以外則削去。”

26) 『儀禮注疏』卷34, 「喪服·記」, “凡衰, 外削幅。”; 許傳, 『士儀』卷18, 「法服篇」2〈「喪服·記」條辨〉, “夫削者, 割也, 外內者, 布幅之外內也。【外邊也, 內中也。】謂正裁者, 割布之邊【衰則正幅。】”

27) 許傳, 『士儀』卷4, 「成人篇1·冠」〈陳設之具·深衣·裳〉, “其後幅當中之縫, 以不削之邊對直, 與衣背縫相值。其前幅當中之縫, 亦對直, 與衣與衽相連之縫相值。”

28) 『家禮』卷1, 「通禮」〈深衣制度〉, “圓袂【用布二幅, 各中屈之, 如衣之長, 屬於衣之左右, 而縫合其下以爲袂。其本之廣如衣之長, 而漸圓殺之以至袂口, 則其徑一尺二寸。】”

29) 『禮記注疏』卷58, 「深衣」, “袷之高下, 可以運肘, 袷之長短, 反詘之及肘。”

30) 許傳, 『士儀』卷4, 「成人篇1·冠」〈陳設之具·深衣·袷〉, “衣袂當腋之縫也。……自肩至腋縫之, 以運肘出入爲度, 其袷, 衣自

허전은 진동이 상의와 소매가 나뉘는 경계이므로, 어깨부터 겨드랑이까지 꿰매면 될 뿐 「가례도」처럼 상의와 가지런하게(衣齊)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옥조」에서 “팔꿈치를 돌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은 팔꿈치를 굽혀 넣고 빼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일 뿐, 그 안에서 팔뚝을 가로로 뺄거나 어깨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허전은 진동이 겨드랑이 아래에 위치하고 「가례도」처럼 상의의 아랫단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³¹⁾

허전은 소매의 가로 길이를 반대로 접어 팔꿈치에 이르도록 길게 만들었다. 그는 심의와 상복을 같은 형태로 보았기 때문에 「상복」에 “소매는 폭을 잇는다.”³²⁾라는 기록을 근거로 온폭의 베를 길(衣幅)의 가장자리(畔)에 이어 붙이고, 또 별도의 반폭을 덧붙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³³⁾ 이렇게 1폭 반을 덧붙여야 남은 소매 끝을 몸쪽으로 접으면 팔꿈치에 이르게 된다.

좌우 각각 1폭 반을 사용한다. 길이는 3척으로 상의에 이어 붙이니 『의례』에 “소매는 폭을 잇는다.”라는 것이다.……그 반폭은 곧 『예기』에 “이어서 가리는 부분이 1척이다(繼掩尺)”이다.…… 좌우의 상의 몸판(衣身)에 각각 1척 2촌과 좌우 소매 각각 3척을 합치면, 가로로 모두 8척 4촌이다.³⁴⁾

『가례』처럼 소매 1폭만 상의 몸판(衣身)의 가장자리(畔)에 연결하면 2척이 되므로, 다시 반폭을 덧붙여 소매의 가로 길이를 3척으로 보고, 길 1척 2촌과 합치면 화장은 4척 2촌으로 계산하였다. 사람의 총 화장은 8척이고 상의와 좌우 소매를 합하면 8척 4촌이므로 한쪽에 대략 2촌 정도가 손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³⁵⁾ 허전은 <그림 2-②>의 「가례도」와 같이 1폭만 연결하면 피부가 드러나 「심의」에 “짧아도 피부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설에 위배되고, 2폭이면 너무 길어 “완전하고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설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특히 2폭씩 덧붙이면 너무 길어 팔 안쪽으로 구겨 넣거나 바깥으로 접어야 해서 손을 들어 용모를 갖출 적에도 그림쇠(規)의 형체가 어긋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³⁶⁾ 그러므로 허전은 「상복」과 「심의」의 경문에 근거해 1폭 반을 덧붙여 심의의 소매를 만들고 그 형태는 둥글게 하였다.

진동으로부터 아래로 둥글게 꿰매 소매의 가운데에 이르러 그 길이를 길게 한다. 또 소매부리(袂口)로부터 둥글게 소매의 가운데에 이르러 그 길이를 길게 하니 『예기』에서 “소매는 팔꿈치를 움직일 수

衣, 袂自袂, 使有界分.”

31)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褶辨〉, “衣與袂若無分界, 則未必有袼之稱也. 袼縫若至於衣齊, 則不當言高下可以運肘也. 蓋運肘者, 謂出入處足以運動其肘, 非擴脇屈臂於其間也. ……袼之止於腋下, 而不齊於衣下, 明矣.”

32) 『儀禮注疏』卷34, 「喪服·記」, “袂, 屬幅.”

33) 許傳, 『士儀』卷7, 「易威篇2·成服·喪服制度」〈衰裳·袂〉, “布全幅, 連屬於衣幅之畔. 又以半幅, 連於全幅之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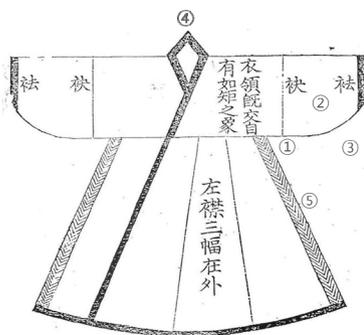
34) 許傳, 『士儀』卷4, 「成人篇1·冠」〈陳設之具·深衣·袂〉, “左右各用一幅半, 長三尺, 連屬於衣, 卽『禮』所云‘袂屬幅’者. ……其半幅, 卽『禮』所云‘繼掩尺’也. ……合衣身左右各尺二寸, 袂左右三尺, 則共橫八尺四寸.”

35)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褶辨〉, “愚意, 深衣之袂, 先以一幅連於衣身之畔, 【卽衣與袂當腋之縫.】則但有二尺, 【除縫資二寸, 故只二尺.】故更以半幅繼之. 又有一尺, 【除縫資一寸, 故爲一尺.】然後其袂之橫, 共三尺, 而與衣幅之博一尺二寸, 合爲四尺二寸, 則二寸出手外矣. 【人身橫八尺, 而衣與袂左右共八尺四寸, 則二寸各出手外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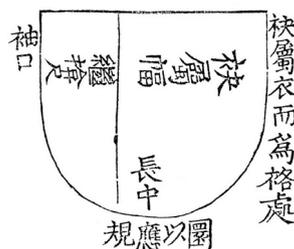
36)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袂辨〉, “幅一膚矣, 【經曰‘短毋見膚.’】幅二費矣. 【經曰‘完且弗費.’】且二幅則太長, 不整于內, 必屈於外, 恐於舉手爲容之際, 規之體虧矣.”

있게 한다(袂可以回肘).”와 “가운데가 길다(長中).”라는 것이다. 소매부리(袖口)는 두 손을 맞잡아 拱手 할 정도로 한다.³⁷⁾

‘동근 소매’에 대해 허진은 「심 의」의 기록을 근거로 논증하였다. 첫 번째는 “소매는 동그략게 해서 그림쇠(規)에 응한다.”³⁸⁾라는 기록을 근거로 반원과 같이 동근 형태로 만들었다. <그림 2-③>의 「가례도」와 같이 진동부터 소매부리까지 둥글게 만드는 형태는 소매부리만을 줄이고 진동 쪽은 줄이지 않아 혹처럼 불룩하게 처진 형태로 그림쇠(規)의 형태가 어그러져 경문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³⁹⁾ 두 번째는 “가운데를 길게 한다(長中).”라는 기록을 근거로 <그림 3>과 같이 본래 소매의 폭과 반폭을 이은 소매의 정 가운데가 세로로 가장 길게 만들도록 하였다. 특히 「심 의」에서 정현 이래로 “長衣와 中衣(長·中)는 이어서 가리는 부분이 1척이다.”라고 해석된 부분을⁴⁰⁾ “가운데가 길다(長中).”와 “이어서 가리는 부분이 1척이다(繼掩尺).”로 분리해 해석함으로써 진동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둥글게 하고, 소매부리로부터 중앙에 이르러 둥글게 만들어 소매의 중앙이 가장 넓고 세로로 길어 팔꿈치를 움직이기 편하게 하였다.⁴¹⁾ 허진은 長衣와 中衣도 심 의와 같은 제도이지만 명칭이 다른 것이므로, 소매의 길이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중의는 朝服이나 祭服의 안에 입는 옷으로 겹옷(上服)의 소매 밖으로 안에 입은 옷이 길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정현의 해석이 오류라고 논증하였다.⁴²⁾ 소매부리는 「상복」의 註를 따라 단지 두 손을 맞잡았을 때의 크기인 1척 2촌으로 보았다.⁴³⁾



<그림 2> 「가례도」의 심 의



<그림 3> 『사의』 심 의 배례

37) 許傳, 『士儀』卷4, 「成人篇1·冠」(陳設之具·深衣·袂), “自袂縫之下圓之, 至袂之中央, 而長其長. 又自袖口圓之, 至袂之中央, 而長其長. 卽『禮』所云‘袂可以回肘’·‘長中’者也. 袖口可容兩手之拱也.”

38) 『禮記注疏』卷58, 「深衣」, “袂圓, 以應規.”

39)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袂辨), “圓殺, 則全圓之可也. 若只殺其袂末, 而不殺腋下, 則不可曰回下, 不可曰應規.”

40) 『禮記注疏』卷58, 「深衣」, “長·中, 繼掩尺.” 鄭注: “其爲長衣·中衣, 則繼袂掩一尺, 若今褻矣.”

41)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長中辨), “長中亦可謂袂回肘之註脚也. 知其然者, 袂圓應規, 則自腋下殺之至于中央, 而長其長. 自袖口殺之, 又至于中央, 而長其長, 然後可以回肘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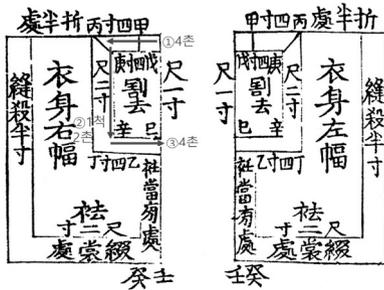
42)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繼掩尺辨), “夫深衣·長衣·中衣制同, 而名異者也. 【但純之采素布有別.】袂之長短, 必不顯絕. 且着在朝·祭服之內, 曰中衣, 則長出於上服之袖外, 決不稱於在內之義矣.”

43) 『儀禮注疏』卷34, 「喪服·記」, 鄭注: “尺二寸, 足以容中人之併兩手也.”; 許傳, 『士儀』卷7, 「易威篇2·成服·喪服制度」(袂), “袖口則容兩手之拱, 以尺二寸爲法, 可也.”

4. 方領[曲袷]

『가례』는 <그림 2-④>와 같이 양쪽 옷깃을 서로 덮어 衿이 겨드랑이에 아래에 있게 하면 양쪽 깃이 만나는 곳이 저절로 네모나게 된다고 하였다.⁴⁴⁾ 그러나 허전은 『가례』와 다른 方領의 형태를 주장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심의와 상복의 형태가 같다는 전제가 있어 상복의 濶中과 심의의 方領을 함께 고찰하였다. 「상복」에서 목이 위치하는 공간인 濶中이 8촌이므로⁴⁵⁾ 허전은 8촌의 濶中 위에 方領의 깃을 달아주는 형태로 정리하였다.

또 關中이라고도 한다. 목을 두는 곳이다. 그 사방은 곧 깃領을 꿰맨 곳으로, 상의 몸판(衣身) 두 조각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그 위에 반으로 접은 곳의 좌우 가운데에서 가로로 각각 4촌을 잘라낸다. 가로로 자른 부분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앞쪽을 향해 곧바로 내려와 1척 2촌을 자르면 자연히 衿의 머리와 가지런한 곳에 그치게 된다. 또 그 아래 4촌을 가로로 잘라낸다.⁴⁶⁾



<그림 4> 『사의』 심의 濶中

허전은 목이 위치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 <그림 4-①>과 같이 상의에서 반으로 접히는 부분을 4촌 잘라낸 다음, <그림 4-②>와 같이 잘라낸 부분이 끝나는 지점부터 아래로 곧게 1척 2촌을 자르고, <그림 4-③>과 같이 자른 부분이 끝나는 지점부터 4촌을 또 잘라내 목 부분을 네모 형태로 파낸다. 이렇게 濶中을 만들어야 목을 편안하게 하고安項 네모나게 감싸(抱方)⁴⁷⁾ 턱 아래가 각진 형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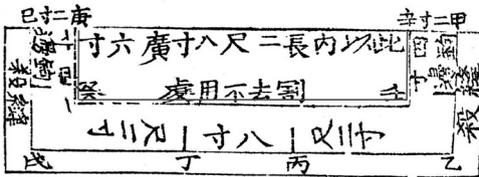
네모나게 판 濶中 위에 깃을 엮는다. 허전은 「심의」에 “曲袷은 곱재(矩)와 같다.”⁴⁸⁾라는 기록을 근거로 曲袷이 方領이라고 보았다. 袷은 상의의 본래 깃(本領)으로, 굽은 깃(曲)은 꺾인(屈折) 형태이고 곱재(矩)는 정방형을 만드는 기구로 조금이라도 기울거나 삐뚤어지거나 길쭉한 형태라면 곱재(矩)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⁴⁹⁾ 깃의 너비는 「옥조」에 “깃(袷)은 2촌이다.”⁵⁰⁾라는 기록을 따라 허전도 2촌으로 하였다.

方領에 겹안(表裏)을 갖춘다. 배 2조각은 길이가 3척 2촌이고 너비는 8촌으로 서로 겹친다. 너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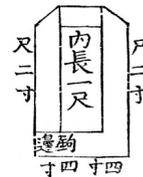
44) 『家禮』卷1, 「通禮」〈深衣制度〉, “方領【兩襟相掩, 衿在腋下, 則兩領之會自方.】”
 45) 『儀禮注疏』卷34, 「喪服·記」, “適, 博四寸, 出於袞.” 鄭注: “博, 廣也. 辟領廣四寸, 則與關中八寸也. 兩之爲尺六寸也.”
 46) 許傳, 『士儀』卷4, 「成人篇1·冠」〈陳設之具·深衣·濶中〉, “亦曰關中. 安項處也. 其四方乃綴領處也, 以衣身二片相對, 其上折半處, 左右當中, 橫割各四寸. 自橫割盡處, 向前直下正割尺二寸, 自然止於衿頭齊處矣. 又橫割其下四寸, 而去之.”
 47) 許傳, 『士儀』卷18, 「法服篇2」〈袞裳總論【與深衣篇參看】〉, “濶中本爲【去聲】安項, 則爲拘方也.”
 48) 『禮記注疏』卷58, 「深衣」, “曲袷如矩.”
 49)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曲袷辨〉, “袷者, 衣之本領也. ……曲者, 屈折之形, 矩者, 正方之器, 若乍斜乍橫, 微直微橢, 【橢狹而長】決不可喻之以曲矩.”
 50) 『禮記注疏』卷29, 「玉藻」, “袷二寸.”

한쪽 가장자리에서 길이의 양 끝을 각각 2촌씩 남기고, 그 3면의 안을 잘라내고 실제로 사용한다. 바로 『예기』의 “깃(衿)은 2촌이다.”라는 것이다. 그 가운데 8촌은 濶中의 뒤쪽에 꿰매고, 위가 앞을 향해 좌우로 접어 내려 꿰매면 자연스럽게 곱재(絺)와 같이 각이 진다. 그 아래 좌우는 각각 8촌이니, 그 4촌은 각각 濶中의 아래에 꿰매고, 그 나머지 4촌은 바로 『예기』의 ‘鉤邊’이니, 衿 머리에 꿰맨다.⁵¹⁾

너비가 8촌이고 길이가 3척 2촌이 완성 치수로, 솔기는 1촌 정도씩 더한다. <그림 5>와 같이 너비에서 좌우 2촌을 남겨두고 길이 2척 8촌이고 너비가 6촌을 ‘U’의 형태로 파내 버리고, 나머지를 바느질해 이중깃을 만든다. 가운데 8촌은 일반적인 깃처럼 뒷길의 윗부분에 꿰매고 좌우에 1척 2촌은 앞쪽을 향해 접고 남은 4촌은 접어 衿의 가장자리와 붙여 <그림 6>과 같이 깃을 만든다. 허전은 옛날의 朝服과 祭服도 方領이고 상복(端衰)의 適도 方領이며, 심의는 曲衿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제도는 같다고 보았다. 허전은 깃을 길게 만들어 상의에서 하상까지 가지런하거나 짧고 비스듬하게 재단해 3~4촌으로 만드는 방식을 비판하면서 가로가 8촌이고 세로가 1척 2촌인 濶中을 만든 다음 2촌 너비의 깃을 달아야 법도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하였다.⁵²⁾ 허전은 배폭의 너비도 고례를 따라 2척 2촌에 기준을 두었으므로 깃에 사용하는 베는 상의 몸판(衣身)을 재단하고 남은 너비가 9촌 정도인 베를 사용했⁵³⁾ 절약하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그림 5> 『사의』 심의 方領 재단법



<그림 6> 『사의』 심의 方領 형태

5. 衿

심의의 형태 중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續衿鉤邊’이다. 주자도 처음에는 司馬光(1019~1086)의 『書儀』를 따라 曲裾로 보았다가 만년에 그 설을 버리고 새로 수정하였지만, 고친 심의제도가 남아있지 않고 『가례』에도 속임구변의 항목이 없어 논란이 증폭되었다. 주자의 제자인 蔡淵(1156~1236)과 楊復(?~?)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가례』의 ‘곡거’ 항목 아래 『예기』 ‘심의’편에 나오는 ‘續衿鉤邊’과 정현의 주에 나오는 ‘鉤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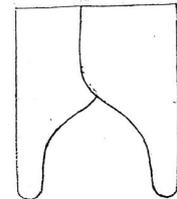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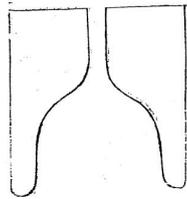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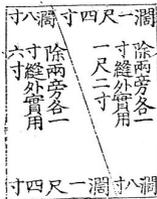
51) 許傳, 『士儀』卷4, 「成人篇1·冠」〈陳設之具·深衣·衿〉, “方領表裏具也。用布二片, 長三尺二寸, 廣八寸者相疊, 乃於廣之一邊, 長之兩頭, 各留二寸, 割去其三方之內, 所留三邊, 爲實用。即『禮』所云‘衿二寸’者也。以其中八寸, 綴於濶中之後, 上向前折下左右而綴之, 則自然如矩之方。其下左右各八寸, 其四寸 各綴於濶中之下, 其餘四寸, 即『禮』所云‘鉤邊’也。綴之衿頭。”

52) 許傳, 『士儀』卷4, 「成人篇1·冠」〈陳設之具·深衣·衿〉, “且古者朝·祭服, 皆方領, 端衰之適, 亦方, 【適辟領】深衣乃名異, 而制同者也。其衿當取之, 而不謬也。胡今之領長者, 或直緣, 齊衣而齊裳, 短者或斜裁, 四寸而三寸, 過與不及不中均也。然則濶中以橫八寸, 縱尺二寸爲度, 然後可合於抱方之義也。”

53) 許傳, 『士儀』卷7, 「易威儀篇2·成服·喪服制度」〈裳衰·方領〉, “此布用衣身裁, 餘布廣九寸者, 可也。”

지금의 곡저와 같다.”라는 문장을 주로 달고 설명을 덧붙여, 정현의 주와 주자 만년의 설이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자가 직접 언급한 적이 없어 주자의 제자들 사이에 이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 학자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추동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⁵⁴⁾

『가례』의 衽은 단지 베 1폭을 비스듬하게 잘라 燕尾 형태로 만들고 넓은 쪽이 위로 가게 한 다음 마주 보게 드리워 하상의 양옆에 있도록 하였다.⁵⁵⁾ 재단 방법은 있지만, <그림 2-⑤>와 같이 전체 모습에 그 형태가 없어 조선에서는 하상을 꿰매는 방법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림 7〉「가례도」曲裾 재단법 〈그림 8〉「가례도」曲裾 바느질 제도 〈그림 9〉「가례도」曲裾 완성

허전은 고례를 기준으로 衽의 형태를 재정립하였다. 그는 「옥조」에서 “衽은 곁에 해당한다.”⁵⁶⁾라고 한 것을 하상에만 적용해 하상의 한쪽이나 양쪽으로 해석하고 위를 좁게 할 것인지 넓게 할 것인지 논란을 벌이면서 상의의 衽을 없애고 제시한 심의의 형태들을 비판하였다.⁵⁷⁾ 허전은 하상뿐 아니라 상의에도 ‘곁’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衽은 상의와 하상에 모두 있어야 한다. 상의에도 衽이 있다는 근거는 疏에서 “상의에 꿰맨다.”라고 한 것과 「問喪」의 衽(上衽), 『論語』의 左衽, 『史記』의 斂衽 등이다. 상의의 衽은 서로 덮어주는 겹섶前襟으로, 왼쪽으로 여메左衽 입지 않도록 오른쪽에도 衽을 두어 겹과 안에 하나씩 있다. 2개의 衽이 양쪽에서 덮어주지 않으면 좌우가 벌어지고 열려서 가슴이 노출되고 배가 바람을 맞고 몸이 노출되므로 심의의 본 의미인 ‘깊고 그윽한 옷’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⁵⁸⁾

바로襟이다. 또衽이라고도 한다. 『설문』에 ‘交衽’이라 하였다. 한 폭으로 베의 안쪽 한 가장자리가 4촌이고, 다른 한 가장자리가 1척 2촌으로 양쪽 끝은 모두 비스듬히 재단해 두 조각으로 만든다. 4촌의 좁은 쪽을 위로 가게 해서 목의 곱재鉤의 가장자리에 잇는다. 1척 2촌의 넓은 쪽을 아래로 가게

54) 고영진, 『조선중기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278~279쪽.

55) 『家禮』卷1, 「通禮」〈深衣制度〉, “用布一幅, 如裳之長, 交解裁之, 如裳之制. 但以廣頭向上, 布邊向外, 左掩其右, 交映垂之, 如燕尾狀. 又稍裁其內旁太半之下, 令漸如魚腹, 而未爲鳥喙. 內向綴於裳之右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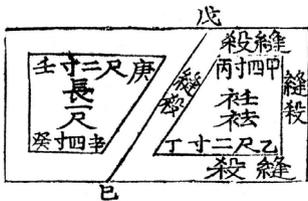
56) 『禮記注疏』卷29, 「玉藻」, “衽當旁.”

57)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衽當旁辨〉, “旨非不明, 惟人晦之, 舉捨切身之衣, 偏取下體之裳, 裳之一旁·兩旁, 狹上·廣上之論【通深衣之裳, 喪服之裳而言】, 終無一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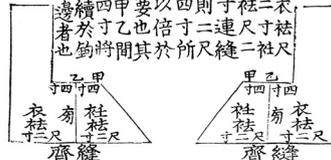
58)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衽當旁辨〉, “袂衽之於衣, 相須而成身【衣身】, 二而一也. 兩衽不掩, 則左右分開而披離, 胸爲之露, 腹爲之風, 體爲之淺, 如是而曰深邃之衣乎?……「問喪」扱上衽, ……「論語」左衽, ……「史記」斂衽. ……愚按, 此皆指衣前相拵之幅而言也.”

해서 하상의 2폭에 꿰맨다. 그 식서(直邊)는 길이대로 상의 몸판(衣身)의 앞쪽 곁에 이으니, 좌우 모두 같다.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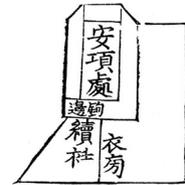
상의의 衽은 <그림 10>과 같이 윗변은 4촌이고 아랫변은 1척 2촌이 되도록 사다리꼴로 재단한 다음, 4촌이 위로 가게 <그림 11>과 같이 상의의 길옆에 식서끼리 맞닿게 꿰맨다. 또 「심의」에 “衽은 곁자(鉤=矩)의 가장자리에 있다.”⁶⁰⁾라는 기록을 근거로 곁의 끝과 연결되게 하였다. 허전은 鉤邊의 鉤가 矩와 통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衽은 方領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상의의 衽은 <그림 12>와 같이 상의의 길 곁에, 方領의 가장자리(鉤邊)와 이어지도록 하였다.⁶¹⁾ 그는 「옥조」와 「심의」는 나뉘어져 있지만, 이 두 편은 글이 중복됨이 없어 서로 보완 관계에 있음에도 후세 사람들이 살피지 않아 續衽과 鉤邊의 행위로 나는 것을 지적하였다. 衽은 「옥조」에 따르면 상의의 좌우 곁에 있고, 「심의」에 따르면 윗머리가 방령(方=曲=鉤=矩)의 가장자리에 있어야 한다.⁶²⁾



<그림 10> 『사의』 심의 衽 재단법



<그림 11> 『사의』 심의 衽 위치



<그림 12> 『사의』 심의 方領과 衽

허전이 생각한 하상은 「심의」를 따라 12폭을 모두 이어 만든다. 그러나 하상의 衽을 오해해서 한쪽 곁만 꿰매 한쪽 곁만 단게 만들거나, 상의처럼 하상의 곁에 교차하게 두거나, 앞쪽이 나뉘어 열리므로 거듭 곁을 덮는 것으로 보거나, 12폭 이외에 별도의 曲裾의 제도로 만든 형태를 주장한 학자들을 모두 비판하였다.⁶³⁾ 그는 衽은 곁과 가장자리에 있다는 「옥조」와 「심의」의 기록을 근거로 하상의 衽은 별도로 덧붙이는 것이 아닌 12폭 중 양 가장자리에 있는 폭으로 보았다.⁶⁴⁾

59) 許傳, 『士儀』卷4, 「成人篇1·冠」〈陳設之具·深衣·衽〉, “卽襟也, 亦曰衿也. 『說文』所云‘交衽’也. 以一幅, 量布之內一邊四寸, 一邊尺二寸, 兩端皆然而斜割之, 爲二片. 四寸之狹爲上, 續於領之鉤邊. 尺二寸之廣爲下, 綴裳二幅, 其直邊之長, 則連於衣身前旁, 而左右皆同.”

60) 『禮記注疏』卷58, 「深衣」, “續衽鉤邊.”

61)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玉藻〔玉藻〕禮記〕篇名〕解〉, “鉤·矩古通. 鉤邊者, 曲袷如鉤之邊也. 謂衣衽之上頭, 續於鉤邊之下也.”

62)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續衽鉤邊辨〉, “玉藻與深衣篇, 雖分爲二, 其文則實無一言重複者. 特此之未悉, 悉於彼, 彼之未詳, 詳於此而已. 故衽字兩出, 而指意迥別, 一則爲左右當於衣旁也, 一則謂上頭續於鉤邊也. 衽當旁, 重在旁字, 續衽鉤邊, 重在鉤邊字, 而後人不察以彼二章, 混而一之, ……以此一句, 分而二之, 【續衽爲一件, 鉤邊爲一件】不當混而混, 不當分而分, 皆過也.”

63)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裳十二幅辨〉, “幅裁十二, ……至或縫合一旁, 而獨拵一旁者有之, 衣交於前, 而裳交於旁者有之, 前面分開, 而重重拵傍者有之. 十二之外贅設曲裾者有之. 【並論裳裳深衣裳也.】”

64) 許傳, 『士儀』卷18, 「法服篇2」〈喪服·記〕條辨〔全論注疏之疑〕, “蓋裳本十二幅, 則連綴其幅前後相合. 但以前邊左右之二

정리하면, 허전은 상의에도 곁[旁]이 있는데 하상만 곁[旁]이 있다고 해석해 맞깃[兩襟]의 곁에 셋 형태의 衽을 해당시키지 않고 상의의 깃[袷]도 가장자리[邊]가 있는데 하상에만 가장자리가 있다고 보고 方領의 가장 자리에 衽을 연결시키지 않은 형태를 모두 비판하였다.⁶⁵⁾ 그러므로 상의와 하상에 모두 衽을 두어 상의의 衽은 三衽의 하나인 셋이고 하상은 12폭 중 양쪽 끝에 있는 2폭으로 논증하였다.

6. 옷고름[衣帶]

옷의 작은 띠[小帶]로, 옷끈[衣系]이라고도 한다.⁶⁶⁾ 심의에 옷고름을 단 이유는 「상복」에 “옷고름은 아래에 1척[衣帶下尺]⁶⁷⁾이라는 기록이 근거이다. 너비가 1촌이고 길이가 1척인 베를 겹으로 꿰맨 다음 길[衣袷]의 결과 깃[衣領]의 끝인 겨드랑이 아래에 안팎으로 달아 옷을 여밀 수 있게 하였다.⁶⁸⁾

7. 下裳

『가례』에 하상은 베 6폭을 사용하는데 1폭에서 한쪽은 넓게 한쪽은 좁게 하되 좁은 쪽이 넓은 쪽의 반이 되도록 비스듬하게 재단해 좁은 쪽을 모두 위로 가게 12폭을 이은 다음 상의와도 연결해 꿰맨다. 허리둘레는 7척 2촌이고 밑단의 둘레는 2배가 되므로 1장 4척 4촌이며 길이는 발뒤꿈치에 닿는다.⁶⁹⁾ 허전의 하상도 『가례』와 같다.

베 6폭을 사용한다. 베 안쪽을 헤아려 좁은 쪽은 6촌이고, 넓은 쪽을 1척 2촌으로 양쪽 끝을 모두 그렇게 비스듬히 자른다. 위아래를 서로 바꾸어 6촌을 윗머리로 삼아 (상의에) 이어 꿰맨다. 옷의 중심 (허리)에 가지런하게 꿰매면 전체 둘레가 7척 2촌이 된다.⁷⁰⁾

허전은 하상의 비스듬하게 재단하는 치수를 『가례』 보다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베폭의 너비 2척 2촌을 기준으로 좁은 쪽은 6촌이고 넓은 쪽은 1척 2촌이며 각 폭을 연결하기 위해 1촌씩의 솔기를 준다. 좁은 쪽인 6촌을 모두 위로 가게 12폭을 연결하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7척 2촌이 된다. 밑단은 1척 2촌이 12개이므로

幅，名之爲衽而已。”

65) 『性齋集』卷9, 「雜著」〈深衣喪服制度策問〉, “衣亦有旁, 奚獨以裳旁爲當旁之旁, 而不當衽於兩襟相對之旁, 袷亦有邊, 奚獨以裳邊爲鈎邊之邊, 而不續衽於方領如鈎之邊.”

66) 許傳, 『土儀』卷4, 「成人篇1·冠」〈陳設之具·深衣·衽〉, “卽衣之小帶, 亦云衣系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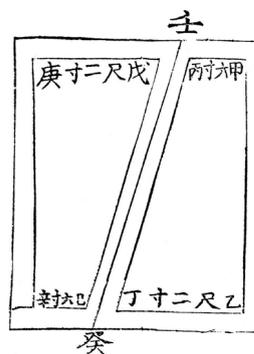
67) 『儀禮注疏』卷34, 「喪服·記」, “衣帶下尺.” 鄭注: “衣帶下尺者, 要也. 廣尺, 足以掩裳上際也.”

68) 許傳, 『土儀』卷7, 「易威篇2·成服·喪服制度」〈衰裳·衣帶〉, “卽衣系也. 用布夾縫, 廣寸許, 長尺許, 綴於內外, 衣衿之旁, 衣領之端, 及兩腋下.”

69) 『家禮』卷1, 「通禮」〈深衣制度〉, “裳交解十二幅, 上屬於衣, 其長及踝. 【用布六幅, 每幅裁爲二幅, 一頭廣, 一頭狹. 狹頭當廣頭之半, 以狹頭向上而連其縫以屬於衣. 其屬衣處約圍七尺二寸. 每三幅屬衣一幅, 其下邊及踝處約圍丈四尺四寸.】

70) 許傳, 『土儀』卷4, 「成人篇1·冠」〈陳設之具·深衣·衽〉, “用布六幅. 量布之內, 狹邊六寸, 廣邊尺二寸, 兩端皆然斜割之. 上下相易, 以六寸爲上頭, 連縫之. 綴於衣之中齊, 共圍七尺二寸.”

굽하면 1장 4척 4촌이다. 이는 허리의 2배가 되어 「옥조」의 “치마 밑단을 꿰매면 허리의 배가 된다.”⁷¹⁾는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허전의 상의는 길과 裱이 1척 2촌이므로 12폭의 하상은 겹길과 裱에 각 2폭씩 4폭, 안길과 裱에 각 2폭씩 4폭, 뒷길에 4폭을 연결하면 허리둘레는 7척 2촌이다.⁷²⁾ 12폭의 하상에서 양쪽 끝에 있는 2폭이 하상의 裱이다.



〈그림 13〉 『사의』 심의 하상 재단법

8. 검은색 가선[黑緣]

『가례』에 검은 가선은 검은색 緇를 사용하고 깃 부분의 너비는 길과 안이 2촌이며 소맷부리와 하상의 밑단은 1촌 반으로 규정하였다.⁷³⁾ 허전은 가선의 너비를 『가례』와 다르게 해석하였다. 그는 2촌의 깃[衿]에 가선도 2촌이 라면 깃[衿]이 없는 것과 같고, 『가례』에 ‘方領과 ‘검은색 가선’으로 나뉘므로 깃과 가선은 2가지 물건이라고 주장하였다.⁷⁴⁾

검은색 緇를 재료로 한다. 깃[領]의 가선은 1촌 반이고, 상의와 하상의 가장자리 옆면과 소맷부리의 가선도 각각 1촌 반으로 안팎으로 끼운다.⁷⁵⁾

허전은 가선이 모두 1촌 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주자대전』에 “늘어뜨리는 부분의 곁은 반촌(紳旁半寸)”이라는 기록에도 2촌의 帶에 반촌의 가선을 위아래로 둘러 1촌의 帶 본바탕을 남겨두는데, 깃만 가선과 깃의 구별이 없게 한 점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또 「옥조」에 “깃[衿]은 2촌이고, 가선의 너비는 1촌 반이다.”라고 깃과 가선을 구별하였고, 「심의」에 “소맷부리의 가선(純袂)과 깃의 가선(緇), 상의와 하상의 옆면 가선은 너비가 각각 1촌 반이다.”라는 기록에 ‘각각’이라고 했으므로 가선은 모두 1촌 반이라고 확정하였다. 허전은 당시 심의의 베 바깥으로 가선을 내거나 가선 위에 또 가선을 달기도 하며, 소매가 짧다고 넓게 하는 등 文質이 없어서 옛 제도와 어긋남을 비판하면서⁷⁶⁾ 方領 형태인 2촌 너비의 깃[衿] 위에 1촌 반의 가선을 둘러 깃의 바탕이 반촌이라도 보이도록 만들어 文質이 어우러지게 하였다.

71) 『禮記注疏』卷29, 「玉藻」, “縫齊倍要.” 鄭注: “縫, 紕也. 紕下齊倍要中齊, 丈四尺四寸.”

72)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縫齊倍要辨〉, “謂縫連二袪之齊, 則尺二寸者二. 故倍於要, 而爲二尺四寸之博也. 前後三疊, 【前左右各一, 後一也.】皆各如是, 則共圍七尺二寸. 綴裳十二幅, 而適足無餘欠也.”

73) 『家禮』卷1, 「通禮」〈深衣制度〉, “黑緣【緣用黑緇, 領表裏各二寸. 袂口裳邊表裏各一寸半. 袂口布外別此緣之廣.】”

74)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緣純辨〉, “至若領緣, 則二寸之袷, 而緣亦二寸, 是無袷矣. ……『家禮』既曰‘方領’, 又曰‘黑緣’, 則別爲二物, 明矣.”

75) 許傳, 『士儀』卷4, 「成人篇1·冠」〈陳設之具·深衣·緣純〉, “黑緇爲材, 領緣寸半, 衣裳邊側及袖口純, 各寸半表裏夾之.”

76)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緣純辨〉, “今之深衣, 或於布外出緣, 緣上又緣, 以爲袂短, 故加廣. 質與文俱亡, 而違於古制而已矣. ……且以『大全』‘紳旁半寸’之文推之, 帶博二寸. 故爲恐黑沒其白 存其一寸之質也. 【兩旁各半寸, 則白質有一寸.】帶猶存質, 領豈獨減質耶. ……愚意, 緣廣寸半之文, 在二寸之下, 似指袷緣, 其又在純袂·純邊之間者, 舉諸處之, 皆各寸半而言也. 如是看, 則並與寸半之二見者, 包在一名字, 不爲疊語矣.”

Ⅲ. 상징성까지 고려한 深衣의 형태 강조

심의를 옷을 구성하는 요소마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허전은 심의제도의 큰 줄기를 규정한 것은 「옥조」이고, 「심의」는 「옥조」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의」에 기록된 상징성까지 고려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형태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옛날에 심의는 대개 제도가 있어서 그림쇠[規]·곱자[矩]·먹줄[繩]·저울[權衡]의 기준에 상응해서 만들었다.……소매는 둥글게 하여 그림쇠[規]에 상응하게 하고, 곡[曲]은 곱자[矩]처럼 구부러서 방정함[方]에 상응하게 하고, 등술[負繩]이 발꿈치에 이르게 하여 곧음[直]에 상응하게 하고, 밑단의 가지런함은 저울[權衡]처럼 하여 수평함[平]에 상응하게 한다. 그러므로 그림쇠[規]는 걸어갈 때 손을 들어 용모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등술[負繩]과 네모나게 써는 깃[抱方]은 그 정사를 곧게 하고 그 의리를 방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밑단의 가지런함이 저울대와 같은 것은 마음을 평정하게 하고 뜻을 편안히 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므로 그림쇠[規]와 곱자[矩]는 그 사사로움이 없음을 취한 것이고, 먹줄[繩]은 그 곧음을 취한 것이고, 저울[權衡]은 그 평정함을 취한 것이다.⁷⁷⁾

그림쇠[規]는 지극히 둥근 형태를 만드는 것이고 곱자[矩]는 지극히 모난 형태를 만드는 것이므로 소매는 완전히 둥근 형태여야 하고, 깃[袷]은 완전히 모난 형태여야 그림쇠[規]와 곱자[矩]에 대응하게 된다. 그러므로 허전은 소매를 반원의 형태로 만들고, 깃은 네모나게 각진 형태로 만들었다. 등에 있는 먹줄[負繩], 등술은 등술기의 가운데가 끈[紉]과 줄[繩]이 있는 형태이다. 허전은 등술을 의미하는 ‘袷’이라는 한자가 있고, 옷에 줄[繩]이 없음에도 ‘負繩’이라고 이름한 이유를 「雜記」와 「內則」을 근거로 파악하였다. 옛날의 冠服은 끈[紉]이나 줄[繩] 같이 곧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용하지 않지만, 심의에는 그 의미가 남아있음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심의는 등술부터 하상의 폭을 연결한 발꿈치까지 줄과 끈 같은 곧은 형태가 이어진다.⁷⁸⁾ 심의의 길이는 복사[跣]까지 와서 땅에 끌리지 않고 밑단을 가지런하게[下齊] 만들어 저울대와 같이 평평함을 취한다.⁷⁹⁾ 하상의 12폭은 12달에 상응한다.⁸⁰⁾ 그러므로 심의는 일을 하거나, 일을 돕거나[擯相] 군대[軍旅]의 일을 처리할 때 모두 입을 수 있어 그 쓰임새가 완비되어 있으면서도 낭비가 없는 옷으로 허전은 결론지었다.⁸¹⁾

77) 『禮記注疏』卷58, 「深衣」, “古者深衣, 蓋有制度, 以應規·矩·繩·權衡.……袂圓, 以應規, 曲袷如矩, 以應方, 負繩及踝, 以應直, 下齊如權衡, 以應平. 故規者, 行學手以爲容. 負繩抱方者, 以直其政, 方其義也.……下齊如權衡者, 以安志而平心也.……故規·矩取其無私, 繩取其直, 權衡取其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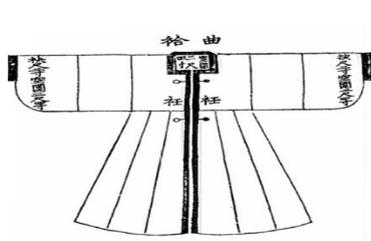
78)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負繩辨〉, “背縫之名, 自有袷字【『說文』袷 背縫】何不曰袷縫? 及踝而必曰負繩也. 其義竊取於負繩應直也. 然則無繩而虛名, 恐非實也. 「雜記」紉以五采, 註「施諸縫中者, 今時條也.」 「內則」組紉, 疏似繩者爲紉. 陳註云「置官服縫中」愚按, 古之官服縫中, 皆有紉繩矣.……然今皆不用, 未敢謂必行, 而特以存羊之意, 書之耳.”

79) 許傳, 『士儀』卷17, 「法服篇1」〈深衣【「深衣」禮記 篇名】解〉, “規爲圓之至, 矩爲方之至. 言袂則至圓, 袷則至方, 以應規矩也. 負繩, 背縫中有紉繩也. 踝, 足旁骨也.……下齊, 裳之齊也.”

80) 『禮記注疏』卷58, 「深衣」, “制十有二幅, 以應十有二月.”

81) 『禮記注疏』卷58, 「深衣」, “故可以爲文, 可以爲武, 可以擯相, 可以治軍旅. 完且弗費, 善衣之次也.”; 許傳, 『士儀』卷17, 「法

허전은 심의뿐 아니라 상복의 깃도 지극히 모난 형태인 곱재(矩)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턱 아래가 네모난 형태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그림 2>의 「가례도」와 <그림 15>, <그림 16>처럼 조선의 심의는 대체로 맞깃이 교차하여 여며 입으면 마름모꼴이 되는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와 다르게 턱 아래가 완전히 네모로 각진 형태는 久菴 韓百謙(1552~1615)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백겸은 <그림 14>와 같이 양 가장자리에서 턱 아래를 네모난 형태로 만들었는데, 허전처럼 상복의 濶中을 적용하고 2촌의 검은 비단으로 그 가장자리에 가선을 두르는 것을 曲袷이라고 보았다. 다만, 『서의』를 따라 맞깃(兩襟)의 형태로 만든 다음 매듭단추(結紐)로 여며 베가 양옆으로 서로 마주하는 것을 衽을 잇는(續衽)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심의가 方領임을 밝히기 위해 소매부리를 ‘袪’라고 하고 좌우 소매의 袪와 양 소매의 중간에 또 소매부리와 같은 깃인 方領을 합쳐 ‘三袪’라고 하였다.⁸²⁾



<그림 14> 『久菴遺稿』 「雜著」
『深衣圖』



<그림 16> 李益姬(1699~1782)
묘 출토 심의 『名選 中』 112쪽.



<그림 15> 李采(1745~1820) 초상
『한국의 초상화』 2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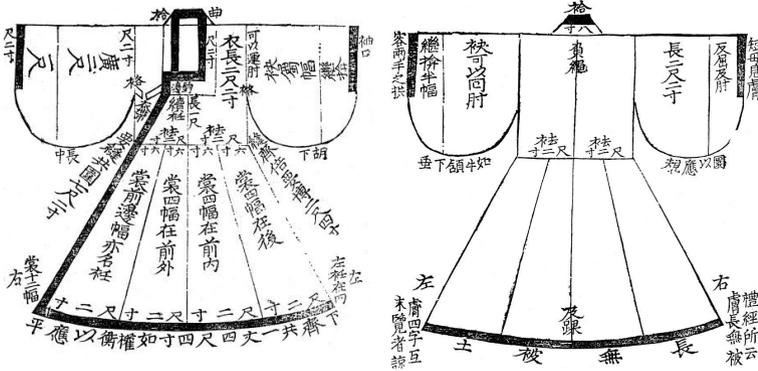
턱 아래가 네모나고 衽을 상의에 위치하게 만든 한백겸의 이론은 허전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허전은 상의에 셋 형태의 衽을 두고, 그 위치는 곱재(矩)와 같은 方領의 가장자리에 있다. 또 길과 衽이 1척 2촌으로 이 둘을 합쳐 袪라고 보고 심의는 앞길과 뒷길, 衽을 합해 3개의 袪라고 주장하였다. 허전은 方領을 만들기 위해 갑자기 상복의 濶中 규격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심의와 상복이 같은 형태임을 전제에 두고 조선의 일반적인 상의의 셋 형태로 衽을 만들어 몸을 깊숙이 감싸는 심의의 본 의미에 맞게 고례의 규정을 해석한 점은 한백겸의 견해를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턱 아래를 각지게 만드는 方領의 형태는 조선에서 비판적인 시선이 강했다. 寒岡 鄭述(1543~1620)는 沙溪 金長生(1548~1631)과의 서신에서 “한백겸이 보내준 심의제도를 받았는데 내가 만든 것과는 자못 합치하

服篇1] <深衣【「深衣」『禮記』篇名】解>，“可以爲文，可以爲武，可以擯相，可以治軍旅，完且不費，善衣之次也。”

82) 韓百謙, 『久菴遺稿』 卷上, 「深衣說」 <曲袷>, “袷, 領緣也. 衣領兩邊當頤領處, 裁割取方, 如今喪服前闕中之制以安頤, 而以二寸卑絹純其邊, 故云曲袷. ……司馬溫公曰方領如今上領衣, 但方裁之, 本出胡服, 須用結紐云云. ……愚意以爲袖口曰袷, 左右袖, 既有袷, 兩袖中間, 又有方領如袖口, 故云三袷, 蓋欲以明深衣之爲方領也.”

지 않아 답장을 보내 상의하려 하였다.”⁸³⁾고 쓰고 있어 당시 학자들이 한백겸의 설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礪溪 柳馨遠(1622~1673)은 자신의 저서인 『礪溪隨錄』에 한백겸의 심의설과 심의도를 받아들여 전부 수록하였다. 靑莊館 李德懋(1741~1793)는 시대가 너무 오래되어 상고할 수 없으나 이것도 하나의 옷이 되기 때문에 입을만하다고 하여 유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다.⁸⁴⁾ 선대의 비판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허전은 「심의」와 「옥조」를 바탕으로 『가례』까지 고찰하여 턱 아래가 각진 方領의 형태가 고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렇게 분석한 심의의 형태를 자신의 문집에 실은 다음 그대로 만들어 입고 초상화를 남길 정도로 중시하였다.



〈그림 17〉 『사의』 심의 앞면(左)과 뒷면(右)



〈그림 18〉 허전의 심의 착용 초상화

출처: 이무지업

(www.emuseum.go.kr).

IV. 許傳 深衣의 특징과 含意-맺음말을 대신하여

허전의 『사의』는 『의례』와 『가례』를 중심으로 經傳과 여러 학자의 중요한 말要語를 수집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先儒의 설 중에 고례에 부합하면서 지금의 時宜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였다.⁸⁵⁾ 허전은 『예기』의 「옥조」와 「심의」 및 『의례』 「상복」이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보고 심의와 상복의 형태가 같다는 원칙

83) 鄭述, 『寒岡先生文集』 卷3, 「答金希元長生」〈別紙〉, “曾蒙韓鳴吉奇示深衣之制, 與臆造賤製, 頗不合.”

84)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8, 「禮記臆」〈深衣〉, “案, 深衣之說, 久遠不可攷. 我國韓百謙久菴之所定, 與此相反. ……柳馨遠礪溪亦普取韓說. 大抵韓所定者, 雖未知合於古者深衣之制, 而自爲一衣, 儼然可服.”

85) 許傳, 『士儀』, 「凡例」, “蓋以『儀禮』·『家禮』爲本, 而蒐輯經傳·子史及古今諸家要語, 以備二書之未備者. ……愚是之懼, 凡先儒論說之合古宜今者, 並取之, 務歸節文之中.”

을 도출한 다음⁸⁶⁾ 깊게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고경의 본지를 얻은 듯하다고 자부하였다.⁸⁷⁾

허전은 길과 싶을 祛로 규정하고, 1척 2촌의 너비를 기준으로 상의 몸판을 만든다. 여기에 2척 2촌의 온 폭 소매를 붙이고 별도의 반폭을 덧붙인다. 진동은 겨드랑이 정도이며, 진동부터 소매부리까지 반원 형태로 둥글게 만들고 소매부리는 1척 2촌이다. 하상은 1폭의 베를 좁은 쪽이 6촌, 넓은 쪽이 1척 2촌이 되도록 비스듬하게 재단해 12폭을 이은 다음 상의와 연결한다. 2촌 너비의 깃을 가운데 8촌은 뒷길의 윗부분에 꿰매고 좌우의 1척 2촌은 앞으로 내리고 4촌은 衽쪽으로 접어 완전히 네모난 형태로 만든다. 衽은 상의와 하상에 모두 있는데, 상의의 衽은 넓고 하상의 衽은 12폭 가운데 양 끝에 있는 2폭이다. 이렇게 완성한 심의에 1촌 반 너비의 가선을 두른다.

허전이 제시한 심의설의 특징은 고례를 준수하고 검소함을 숭상하는 것으로 귀결된다.⁸⁸⁾ 고대의 복식 제도 중에 현재까지 내려오는 제도는 오직 심의와 상복뿐으로,⁸⁹⁾ 심의를 제대로 고찰해 입는 것 자체가 고례를 준수하는 것이다. 그는 당시 조선 사람들은 선왕의 법도에 벗어난 옷을 대부분 입었고, 고종이 의제 개혁으로 인해 더욱 옛 제도와 멀어지게 되었다고 한탄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道袍, 鶴氅衣(襲衣), 襲衣(昌衣), 中衣 등으로, 모두 경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두루마기(周衣)를 만들었으나, 이 역시 옛 제도에 근거가 없고 백색이나 청색, 흑색 등 색도 일정하지 않아 선왕의 제도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⁹⁰⁾

옛날과 지금에 모두 통용되는 옷은 심의로 『예기』 「옥조」와 「심의」편에 그 제도가 기록되어 있다. 심의는 성인이 입었고 선왕이 귀하게 여겼으며 문무에 두루 입고 일을 돕거나 군대와 관련된 일에도 입으며 귀천과 길흉, 남녀의 구분이 없이 모두 입을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입을 수 있으면서 그 형태는 상징성까지 가지고 있다. 방령은 곱재(矩)와 같은 방정함(方), 반원 형태의 둥근 소매는 그림쇠(規), 등술은 먹줄(繩)과 같은 곧음(直), 아랫단이 가지런함은 저울(權衡)과 같은 평평함(平)을 상징한다. 하상의 12폭은 1년 12개월의 큰 수에 응하는 의미이다. 또 가선의 색상을 달리 하여 부모의 존재 여부까지 표현해 인륜의 가장 큰 의미까지 나타내므로 성인이 심의를 만들어 입은 것이라고 허전은 설명하였다.⁹¹⁾

허전이 고례를 준수한 이면에는 검소함을 숭상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입었던

86) 『性齋集』卷9, 「雜著」〈深衣喪服制度策問〉, “深衣之制, 助於『禮記』, 而漏於『儀禮』. 喪服之制, 著之『儀禮』, 而闕之『禮記』.”

87) 『性齋集』卷17, 「法服篇1」, “愚敢忘其僭踰, 潛索力究, 博采旁搜, 積以歲月, 然後融會貫通. 悅若有得於古經本旨, 妄有所論辨如左.”

88) 『性齋集』卷1, 「疏」〈請服深衣疏〉, “未必無少補於向儉法古之萬一矣.”

89) 『性齋集』卷9, 「雜著」〈深衣喪服制度策問〉, “古服之制, 幸而垂後者, 惟深衣·喪服而已. 一貴賤男女吉衾而服之者, 深衣也.”

90) 『性齋集』卷1, 「疏」〈請服深衣疏〉, “今我殿下, 以天縱之睿智, 憫風俗之頽弊, 特軫琴瑟更張之道, 爰發衣服改製之令, 澆汗之號, 孰敢不行, 而上下疑怪, 外內騷動者, 無他, 所言者習慣於今世之常着, 所改者乖舛於先王之古制故耳. 大抵東俗所着之衣制, 有非先王之法服者多. 其所謂道袍·襲衣·昌衣·中衣同衣者, 不見於經傳. ……此聖上所以革祛之誠是也, 然而新定式中周衣云者, 亦無古制之可據, 且其質則或白或青或黑, 無一定之色, 恐不可為不易之法也, 都不如一遵先王之制.”

91) 『性齋集』卷1, 「疏」〈請服深衣疏〉, “通用深衣, 合古而宜今也. ……其法該備於戴記之『玉藻』·『深衣』二篇, 其文曰聖人服之, 先王貴之, 可以為文, 可以為武, 可以為擯相, 可以治軍旅. 故上下不嫌同名, 吉凶不嫌同制, 男女不嫌同服. 其裁制則方領以應矩, 圓袂以應規, 負繩以應直, 下齊如權衡以應平, 裳幅十二, 以應一歲之大數. 又況緣之以纁以青以素之別者, 蓋人倫莫大於父母, 故特以其大父母父母之存歿, 表以出之於上衣也. 至哉, 聖人制服之義也.”

도포, 창의 등의 옷들은 소매가 넓고 길이가 길어 활동하기(周旋) 편하지 않고, 뒤나 좌우가 트여있어 몸을 가리지도 못한다. 襲衣로 사용되지만, 허전은 사치를 숭상하고 비용을 낭비하므로 선왕의 제도가 아니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심의는 소재가 베이고 색도 백색이며, 남녀와 길흉에 모두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완전한 옷”으로 판단하였다. 「심의」를 따라 만든다면 필요한 베는 24~25척 정도지만, 길어도 땅이 끌리지 않고 짧아도 피부를 드러내지 않는다. 소매도 크게 넓지 않으면서 손을 들어 읊하고 사양하는 [揖讓] 동작을 취하더라도 예의 모양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허전은 조선에서 심의의 간편함을 알지 못해 제대로 착용되지 못하는 점을 한탄하면서 두루마기(周衣) 대신 심의를 입으면 선왕의 의제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믿었다.⁹²⁾

허전이 「옥조」와 「심의」를 기준으로 재해석한 심의는 완벽하면서도 낭비가 없는 옷으로 함축할 수 있다. 완벽하다는 것은 고례의 기준에 부합하고 다양한 용도에 착용하는 성인들이 입던 옷이며 곧고 방정하고 수평한 상징까지 담고 있어 조선 유학자들이 섬길만한 마음가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낭비가 없다는 것은 당시 조선의 옷에 비해 소매가 넓지 않고 길이가 길지 않아 직물을 절약할 수 있다. 고례를 준수하고 검소함을 숭상하려는 허전의 문제의식은 星湖 李瀼(1681~1763)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익은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을 고려해 사대부의 질서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예제를 보완하고 불필요한 비용의 절약에 중심을 두었다. 이익이 ‘禮의 간소와 절검’을 추구해 간략하게 수행하고자 했다면,⁹³⁾ 허전은 고례와 『가례』를 중심으로 조선의 시속도 고려하면서 검소함을 숭상해 절검까지 고려한 심의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는 성호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되 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禮記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0.

『儀禮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0.

『朱子家禮』, 학민문화사, 2001.

許傳, 『土儀』

許傳, 『性齋集』

고영진, 『조선중기예학사상사』, 한길사, 1995.

92) 『性齋集』卷1, 「疏」〈請服深衣疏〉, “而或廣袖長裾, 不便於周旋, 或拆開後面及左右, 不能以蔽體, 而重重襲服, 徒尚侈靡. 虛費物財, 何所爲而爲此乎?……其質則布也, 其色則白也, 故曰完且不費. ……且其用布不過鍼尺二十四五尺, 長無被土, 短無現膚, 袖亦不過鍼尺九寸, 則又非太廣, 而其於舉手揖讓之際, 綽有禮容之可觀, 豈不善哉? 殿下若早知深衣之制若是簡便, 則必以此下令, 而惜乎!……周衣之周字, 改以深衣之深字, 則一字之中, 先聖王衣制煥然復明.”

93) 이봉규, 「실학의 예론 - 성호학파의 예론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사학회』 24, 한국사상사학회, 2005, 121쪽.

- 劉權鍾, 「茶山 丁若鏞의 深衣說 연구」, 『退溪學報』 105, 퇴계학연구원, 2000.
- 이봉규, 「실학의 예문 - 성호학파의 예문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사학』 24, 한국사상사학회, 2005.
- 李恩卿, 「朝鮮王朝의 布帛尺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장동우, 「『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 과정 - 동전 판본 문제를 중심으로 -」, 『국학연구』 1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 정경주, 「性齋 許傳의 士儀 禮說에 대하여」, 『東洋漢文學研究』 19, 동양한문학회, 2004.
- 정혜경, 『심의(深衣)』,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 이 논문은 2021년 2월 22일에 투고되어,
2021년 3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4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n the *Simui* of Seongjae Heojeon

Cha, Seoyeon*

This article examines Heojeon's interpretation of the symbolic meaning of *simui*, the cloth for Confucian scholars. He analyzed *Yegi* and *Uiryae* alongside with *Garye*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ontents of the sections of "Simui" and "Okjo" in *Yegi* are complementary to the section of "Sangbok" in *Uiryae*: the approach, from which he was confident that he found the essence of the ancient scriptures.

According to his interpretation, *simui* could be worn on in a variety of situations no matter whether the wearer is a civil or military officer, man or woman, what social class he or she belongs to, and how fortunate or unfortunate the situation is. Its design also enfolds some symbolic meanings; for instance, *bangryeong*, a rectangular-shaped collar under the neck, signifies the carpenter's square, the sleeves arched in a semicircle shape means a rule, stitches on the neck symbolizes straightness, and the alignment of the lower rim signifies the evenness of a scale. On the other hand, the size of the trousers, twelve *poks*, correspond to the twelve months of one year.

Regarding the debate about the meanings and locations of *gokgeop* and *sogimgubyeon* in *simui*, Heojeon, based on the scriptures, concluded that *gokgeop* is *bangryeong*, a collar with a rectangular-shape under the neck area whereas *im* in "*sogimgubyeon*" means the patches located both on the shirt and trousers. (The patch attached at the end of *bangryeong* in the case of the shirt and the two *poks* at the end of the twelve *poks* of trousers.) Despite the negative recognition of the rectangular shape of the collar at the time, Heojeon claimed only that form corresponds with the ancient rite and the record in *Garye*.

Simui Heojeon suggested was the cloth with perfection and no waste, expressing the veneration for abstemiousness following the ancient scriptures. He was confident that, by making and wearing *simui* correctly according to his suggestion, people in Joseon could not only express their respects for the ancient saints but also fulfill the lesson of previous kings by saving fabrics.

[Keywords] *Simui* (深衣), *Bangryeong* (方領), Heojeon (許傳), *SaUi* (士儀), *Seongjaejib* (性齋集), *Garye* (家禮), *Yegi* (禮記), *Uiryae* (儀禮)

* Researcher,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Yonsei University.